

인사규정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6.1.28

케이티 노동조합

위원장 정 윤 모 (인)



**【인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】**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&lt;생략&gt; 1~18호 &lt;생략&gt; <u>19호 (신설)</u>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&lt;좌동&gt; 1~18호 &lt;좌동&gt; <u>19. 강직이라 함은 현 직급에서 1단계 강등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강직의 정의</p>
<p>제28조(정년)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예비군지휘관, 비상대비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 중인 직원의 정년 및 근무기간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의 익월 1일에 당연 퇴직 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연퇴직된다. <u>(신설)</u></p>	<p>제28조(정년)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예비군지휘관, 비상대비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 중인 직원의 정년 및 근무기간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의 익월 1일에 당연 퇴직 된다. 다만,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연퇴직된다. <u>&lt;개정 2015. 4. 23.(시행 2016. 1. 1.)&gt;</u></p>	<p>시행일 명확화</p>
<p>제13장 보칙 제46조(인사기록) ① 인사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, 유지, 보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작성에 관하여는</p>	<p>제12장 승진 제46조(강직) 인사권자는 허수경영, 성과왜곡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사유가 승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</p>	<p>제 12 장 승진 강직 조항 신설</p>

<p><u>회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<u>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강직할 수 있다.</u></p>	
<p>제13장 보칙 제46조(인사기록) ① 인사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, 유지, 보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작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13장 보칙 제47조(인사기록) ① 인사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, 유지, 보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작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조문 변경</p>
<p>제47조(권한의 위임) 회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그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48조(권한의 위임) 회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그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조문 변경</p>
<p>제48조(직원의 신분보장) 회사의 직원은 당연면직 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며 징계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해임, 감봉, 견책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.</p>	<p>제49조(직원의 신분보장) 회사의 직원은 당연면직 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며 징계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해임, 감봉, 견책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.</p>	<p>조문 변경</p>

※ 부칙 (2016. XX. XX)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